

## 별첨 1

#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용

### ○ 수출지원 상세내용

지원유형	지원 프로그램	내용
수출지원	판로개척 컨설팅 및 해외바이어 매칭 (A와 B를 지원비내 연계가능)	A.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조사와 전략수립, 제반 준비 - 해외시장 조사 및 분석 - 해외진출 전략 수립 - 해외 수출 유통채널 확보 및 판매전략 수립 - 진출 국가에 대한 법무.세무.회계.조직 구성 등에 컨설팅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 B.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 및 수출 사전 준비를 위한 국외 발생 바이어 미팅, 기술미팅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국내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 해외 바이어 미팅 지원 - 바이어 요구 대응 제품/기술 소개, 현장제작 대응
	홍보물제작 (해외)	A. 현지 판매망 구축, 바이어에 대한 홍보, 해외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해외 홍보물 제작 지원 - 홍보물 제작 통번역 지원 - 해외 마케팅용 브로슈어, (전자)카탈로그, 동영상, 외국어 지원 홈페이지 제작 - 해외 SNS 게시용 및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물 제작
	수출역량 강화교육	A. 교육 전문기관의 수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전략시장 진출 전문교육 등 수출 관련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교육서비스 비용 지원

### ○ 사업화지원 상세내용

지원유형	지원 프로그램	내용
사업화지원	기업진단 컨설팅	A. 기업의 기술, 조직, 인프라, 재무 등 다양한 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한 SWOT 분석식 성장해법 도출 - 기술결쟁력, 공정효율, 조직운영, 재무상태 등 경영진단 - 신사업재편 연계 사업전환 컨설팅 - R&D 역량 진단 컨설팅
	기술자문	A.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애로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술자문비 지원

○ 사업화지원 상세내용

지원유형	지원 프로그램	내용
사업화지원	시제품제작	A.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양산 이전의 성능 개선 및 검증 - 연구개발 완료된 기술의 구체화 및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기존 또는 신규 바이어 대상 세일즈 샘플 제작 - 전시회 및 수요기업 대상 홍보용 샘플 제작 ※ 양산 또는 직접 판매용 제품은 불가
	디자인·마케팅 지원	A. 기업 신제품 홍보 및 제품고급화를 위한 디자인 개선, 브랜드메이킹, 기업 이미지 개선, 마케팅 전략수립 등 - 제품·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개선 - 기업 CI, BI 등 기업 이미지 개선 디자인 및 컨설팅 - SNS 프로모션 기획 등 신규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IP R&D	A.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 - 특허관련 분석을 통한 핵심특허 대응전략 컨설팅 - 기업 기술역량을 통한 R&D 과제 기술요소 확보 및 특허 창출
	시험인증	A. 인증/평가 시험분석 등과 관련된 입주기업 애로 해결과 해외개척 진출 지원 - 국내외 제품인증 및 인증마크 획득 지원 - 성능·안전성 검증 시험성적서 취득 및 인증획득 지원 - 공인인증 시험비용, 인증신청비, 심사비 등 지원
	홍보물제작 (국내)	A. 신제품, 기업전환, 사업재편, 고급화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 지원 - 홍보물에 대한 통번역 지원 - 브로슈어, (전자)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 SNS 게시용 및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물 제작
	역량강화교육	A. 기업운영을 위한 경영, 기술 등의 직원 전문교육비 지원

○ 종합패키지지원 상세내용

지원유형	지원 프로그램	내용
종합패키지 지원	종합패키지 지원	A. 수출지원, 사업화 지원, 기업의 특별추진항목 3가지 지원프로그램의 세부항목을 종합하여 패키지 지원 - 종합패키지지원을 통해 선택한 각 프로그램은 상위 수출지원 및 사업화지원의 금액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기업의 특별추진항목은 수출지원, 사업화지원 항목 이외에 기업이 추진하는 사항을 말하며, 사전컨설팅 및 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프로그램 신청 시 유의 사항

프로그램명	유의사항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불인정 공통 항목</li> <li>- VAT(부가가치세)</li> <li>- 임차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li> <li>- 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li> <li>- 출장 경비, 식대, 인건비, 선물 구입비, 공공요금(수도세, 전기세 등)</li> <li>-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li> <li>-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li> <li>-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li> <li>- 참여기업의 역할이 불확실할 경우(ex. 3자 위탁개발 등)</li> <li>- 자산형 장비구축(ex. 설비구축 등), 주업종불일치(내부자거래), 단 순자금지원, 단순 원자재 조달,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비</li> <li>- 상품성·단발성(일회성 판매용)·판매용 제품 제작 비용</li> </ul>
<p>역량강화교육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수료증 및 지급영수증 첨부</li> <li>○ 교육대상자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자 명부상 근로자 확인</li> <li>○ 교육기관은 공신력이 있는 정식 교육기관을 활용</li> <li>○ 선정이후 교육시작 사항만 인정</li> </ul>
<p>기업진단 컨설팅 지원 기술자문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수당 : 1회 최대 30만원</li> <li>○ 전문가를 지정해둔 경우, 전문가 프로필을 제출하여야 함</li> <li>○ 멘토링 보고서(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이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함</li> <li>○ 지원과제와 전문가의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참여 제한될 수 있음</li> </ul>
<p>시제품 제작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신상품 개발, 기존상품 개선, 제품 고급화 등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li> <li>○ 단일거래처 발주는 사업비 규제 항목으로, 참여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한 자료 증빙을 통해 사용 가능</li> </ul>
<p>IP R&amp;D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인증 지원</li> <li>○ 금액이 과다할 경우 원가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음</li> </ul>

판로개척 컨설팅 및  
해외바이어 매칭

- 외유성 출장, 참여기업의 일반 국외 업무의 연장(대리점 방문, 거래선 인사) 등 지원 제외

[ 국외 방문 바이어 미팅 & 국외 벤치마킹 방문 ]

- 1회 최대 지원 한도 : 4백만원 이내
- 왕복항공료 기준
  - 일반석 등급 좌석만 지원
  - 건당 2인 한도(2인 이상 출장 시 역할분담이 명확한 업체 내 품 의서 필히 첨부)
  - 비즈니스석 이상 등급 시 지원 제외
  - 국내만 이동 시 지원 제외
- 숙박비
  - 지역별 별도 내규(아래 표 참조)

국가 지역별 급지	1인	2인	국가	적용기준
A지역	210\$	350\$	유럽 마주, 호주, 대도시 (중국 동남아 제외)	· 1회 출장 시 최대 숙박일 4일 한도 · 실사용비의 80%지원
B지역	135\$	230\$	A지역 미포함 국가 도시 (바이어 초청 시 B지역 적용)	

-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 상담회에 참가에 따른 바이어미팅은 지원 제외
  - 벤치마킹으로 전시회 참가 시 참가업체와의 실제 상담 및 교육자료 필수
- 결과보고서 작성 시 미팅사진, 실적, 효과, 결과에 대한 내용 필수 기록
- 환율은 숙박비 결제일의 매매기준율 적용
- 요청 시 바이어와의 이메일 송수신 또는 자체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 해외바이어 초청 및 국외 우수제품사 전문가 초청 ]

- 1회 최대 지원한도 : 4백만원 이내
- 왕복 항공료
  - 1인 왕복항공권 지원(일반석, 이동시 순로 기준)
  - 한국 내 구입 항공권만 인정, 현지구입 후 비용지원 불인정
- 숙박비
  - 1인 3박 한도 지원(1일 20만원 한도)
  - 호텔의 경우 일반실 기준 인정(울산 지역만 인정)
- 통역비
  - 1일 30만원, 최대 3일, 통역업체를 통한 통역만 인정.
  - 최초 2시간 15만원(영·중·일)/20만원(기타), 추가 1시간당 3만원(공통)

**별첨 2**
**제출서류 목록(공통)**

순번	제출자료	내 용	비 고
1	지원신청서	1부	직인날인된 원본은 발표평가 시 제출
2	사업계획서	1부	-
3	견적서	1부	사업비 구성 증빙용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2022년 재무제표 미확정일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7	참여기업 자료제공 확약서	1부	-
8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9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10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1부	사업장 소재지 이전일자 확인 필요시

### 별첨 3 사업공고 관련 법령 및 규정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에 대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 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 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